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지스자산운용(주)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이지스 라이징 K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지스 라이징 K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이지스 라이징 K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및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4년 8월 2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9월 5일**
6. 모집 또는 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10조원]
7. 모집 또는 매출기간 (판매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 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CONTENTS)

요약정보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 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원본손실위험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위탁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신청시의 예상 환매금액보다 실제 수령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타 집합투자증권의 순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됩니다. 또한 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 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 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최초설정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따른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 달성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관할 국가가 대한민국 이외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 국가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의 과세 관할 국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재간접형 투자신탁으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라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이 투자신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 87 조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 81 조의 4 에 따라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투자자(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에 한함)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 59 호의 3 서식에 따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신청서」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배당소득 분리과세등 적용을 받고 이 투자신탁 투자일부터 3 년이 지나기 전에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이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오니 투자결정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지스 라이징 K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펀드코드: DZ411]

투자위험등급 2등급[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이지스자산운용(주)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60% 이상을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 관련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집합투자증권 투자에 따른 재간접 투자신탁의 투자위험,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함에 따른 부동산 관련 투자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2 항 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부동산(리츠-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추가납입 가능), 종류형,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해당 없음										
투자비용	클래스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선취수수료-오프라인형(A)	납입금액의 1.0%이내	1.35	0.60	1.690	1.35	237	379	526	836	1,71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형(C)	없음	1.73	0.98	1.720	1.73	177	360	549	946	2,054
	선취수수료-온라인형(A-e)	납입금액의 0.5%이내	1.05	0.30	1.170	1.05	157	268	384	629	1,331
	수수료미징구-온라인형(C-e)	없음	1.24	0.49	1.490	1.24	127	259	396	685	1,507
<p>(주1)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주2)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 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으로, 수수료를 및 총보수, 비용 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p>											

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 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3)'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 비용(2024년 7월 31일 기준)을 의미합니다.

(주4)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되는 경과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8.22 ~24.08.21	-	-	-	
선취수수료-온라인형(A-E)	15.46	-	-	-	14.71
비교지수(%)	-	-	-	-	-
수익률 변동성	7.91	-	-	-	7.79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주1)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2)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 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4)선취수수료-온라인형(A-E) 클래스의 수익률을 대표로 기재하였고, 다른 종류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생년	직위	운영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부동산)				운영경력년 수
			집합투자 기구 수 (개)	운영 규모 (억원)	운영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희선	1981	이사 (책임)	16	9,334	17.89%	3.82%	-11.64%	-12.16%	13년 8개월
박준우	1984	부장 (책임)	16	9,334	17.89%	3.82%			9년 5개월

운영전문인력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5개 / 3,534억 원]

(주1)'책임운영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 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영전문인력"은 책임운영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영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영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간이투자설명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 또는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는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각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과 같은 시장위험과 개별기업 및 투자신탁의 수익성 등의 개별위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또한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에 의해서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가격변동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경제 상황, 수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등의 유동성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국내 리츠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요하게 투자하는 국내 리츠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및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내 리츠가 투자한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각이 지연될 수 있어, 해당 리츠의 신탁계약기간내에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내 리츠가 투자한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각 시점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조기 상환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 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매입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2영업일(T+1)의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15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3영업일(T+2)의 기준가격으로 5영업일(T+4)에 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3영업일(T+2)의 기준가격으로 매입		15시 30분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4영업일(T+3)의 기준가격으로 6영업일(T+5)에 대금 지급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순자산 총액(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세제(퇴직연금 전용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연금저축 종류 수익증권만 해당)

이 투자신탁은 연금저축계좌 불입 금액의 수령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의 과세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환매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신탁에 대한 해당 과세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지방세법 등의 적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과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이지스자산운용(주) (대표전화: 1544-7373, 인터넷홈페이지: www.igisam.com)		
모집기간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 좌
효력발생일	2024년 9월 5일	존속기간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

	수수료 미징구	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및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주1)기타에 해당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가입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계약 및 투자설명서 '제2부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 (4)종류별 가입요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http://www.igisam.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igisam.com>)
-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www.igisam.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DZ41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Z419
수수료선취-온라인(A-e)	DZ4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Z4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Z4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Z4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Z4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Z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Z4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Z4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Z4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Z4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Z4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Z43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Z4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Z4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DZ43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부동산(리츠-재간접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해당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좌 (1좌 = 1원, 펀드 최초설정일 기준)

(주1)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가 가능합니다.

(주2)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3)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 모집장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이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 전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DZ411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DZ419
수수료선취-온라인(A-e)	DZ4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DZ4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DZ422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DZ4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DZ4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DZ4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DZ4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DZ42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DZ4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DZ42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DZ4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DZ43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DZ43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DZ43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DZ43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23 년 8 월 9 일	투자신탁 최초설정
2024 년 9 월 5 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기결산으로 인한 갱신(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 등) 2)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현황 업데이트 3)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정 개정사항 반영 - S 클래스(S, S-P, S-P2) 가입자격 변경 등 5) 예금보험관계 표시 및 설명·확인에 관한 규정 개정사항 반영 6)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연금세제)

7)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 (여의도동 세우빌딩) 14 층 (대표전화: 1544-7373, www.igisam.com)

(주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

(2024.08.2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부동산)				운용 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희선	1981	이사 (책임)	16	9,334	17.89%	3.82%			13년 8개월
박준우	1984	부장 (책임)	16	9,334	17.89%	3.82%	-11.64%	-12.16%	9년 5개월

성명	주요 운용경력
강희선	· 삼성에버랜드(주) 리조트사업부 (3년)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개발팀 (1년) · 한화자산운용 글로벌 SI 팀/부동산투자팀 (5년) ·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 (5년 9개월) · 이지스자산운용(주) 대체증권투자팀 (3년 2개월)

박준우	· 신영증권 자산운용부 (6년 5개월) · 이지스자산운용(주) 대체증권투자파트 (3년)
-----	---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 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 5개 / 3,534억 원]

(주1)'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팀운용 방식으로 운용되며 책임운용전문인력 부재 등 상황에 따라 해당 팀 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주2)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 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운용전문인력 변동 사항

운용전문인력	운용 기간
강희선, 박준우	2023.08.09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부동산(리츠-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3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며, 집합투자증권

	후취	매수일로부터 일정기간 이내 환매시 판매사가 정하는 판매수수료의 비율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 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슈퍼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집합투자기구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하고자 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집합투자증권 및 기관투자자 등에 한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용 및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이며 각 펀드별로 가입자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전용 등의 집합투자기구입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3)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입자격	수수료율			보수(연, %)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집합 투자	판매	신탁	일반 사무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	-	0.7000	0.6000	0.0300	0.02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	-	0.7000	0.3000	0.0300	0.02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납입금액의 0.7% 이내	-	-	0.7000	0.42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	-	-	0.7000	0.98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	-	0.7000	0.49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	-	-	0.7000	0.68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	-	-	0.7000	0.03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	-	-	0.7000	0.29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	-	-	0.7000	0.6400	0.0300	0.0200

가입자격	수수료율			보수(연, %)			
	선취 판매	후취 판매	환매	집합 투자	판매	신탁	일반 사무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	-	-	0.7000	0.32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	-	-	0.7000	0.36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	-	-	0.7000	0.18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	-	-	0.7000	0.0000	0.0300	0.02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0.7000	0.23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	-	-	0.7000	0.2000	0.0300	0.02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	-	-	0.7000	0.1700	0.0300	0.0200

(주1)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가입자격을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 요건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필요성 및 선정기준

이 투자신탁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장 리츠, 인프라 펀드, 및 상장지수 펀드(채권형)입니다. 상장 리츠는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임대수익과 매각차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처로서 배당수익과 주가 상승에 따른 자본이득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인프라 펀드는 도로, 공항, 터널,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대표적인 인컴 투자처이자 부동산 사이클과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자산으로 상장 리츠 투자 포트폴리오의 분산효과 증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입니다. 상장지수 펀드(채권형)는 소액으로도 채권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한 투자 솔루션으로 단기자금의 수익률을 증대하고 상장 리츠 및 인프라펀드의 변동성을 감소하는 목적으로 투자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정량적인 선정기준은 보유한 부동산의 순자산가치대비 현재 주가의 저평가 정도, 국채 수익률 대비 배당수익률 스프레드 매력도, 이익 성장성, 환금성, 부채비율 등입니다. 아울러 상업용 부동산 섹터 별 사이클, 금융시장 환경에 따른 경영진의 전략 등 정성적인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별합니다. 상장지수 펀드(채권형)의 경우 보유 자산의 만기수익률, 듀레이션, 환금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 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자본시장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함)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합니다.

구분	투자대상	세부내용	투자한도
①	집합투자증권 등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것을 포함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50% 초과 (단, 부동산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에는 투자는 60% 이상)
②	주식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주식"이라 한다)	40% 미만
③	채권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이하 "채권"이라 한다)	40% 미만
④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이하 "자산유	40% 미만

구분	투자대상	세부내용	투자한도
		동화증권"이라 한다)	
⑤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 (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이라 한다)	40% 미만
⑥	환매조건부 매도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 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음)	증권총액의 50% 이하
⑦	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 대여	증권총액의 50% 이하
⑧	증권의 차입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20% 이하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 재산과의 거래	-
<p>※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p> <p>가. 단기대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p> <p>나.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p> <p>다.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p>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아래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를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p>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p> <p>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p> <p>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투자대상의 ①,②,③,④,⑤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p>			

※ 투자대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예외
①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p>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p> <p>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p>	-
②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p>투자신탁재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p> <p>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 조 제 1 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 제11항, 제77조 제4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p>	<p>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③ 동일종목증권	<p>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법 시행령 제2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p>	<p>최초 설정일로부터 1개월간</p>

구분	내용	예외
	<p>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1 호 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 4 조 제 3 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31 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 32 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후순위 사채권 또는 후순위 수익증권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 투자하는 것을 정한 집합투자기구만 해당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 제 5 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 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p>	

구분	내용	예외
	<p>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p>	
④ 동일법인 발행 지분증권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⑤ 계열회사 발행 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⑥ 후순위채권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p>-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상기 '가. 투자대상'의 ⑥, ⑦, ⑧, '나. 투자제한'의 ②, ③, ④, ⑤, ⑥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않으면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름))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p>- 상기 '나. 투자제한'의 ②의 가목 및 나목, ③의 본문의 투자비율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p> <p>- 상기 '나. 투자제한'의 ②의 가목 및 나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수가 30종목 이상일 것 나.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하나의 종목이 그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그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이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된 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 제2항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구분	내용	예외
2.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자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 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상기 '나. 투자제한'의 ②의 나목을 적용할 때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습니다.	

※ 투자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자금의 차입

- (1)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② 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 ③ 그 밖에 투자신탁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법 시행령 제 83 조 제 2 항으로 정하는 때
- (2)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3)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 중 금전을 대여(신탁계약서 제 15 조 제 2 항 제 1 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함)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5)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자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라.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 필요성, 선정기준 관련 정보는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국내 상장 리츠, 인프라펀드, 및 상장지수펀드(채권형)의 경우, 한국리츠협회(<http://kareit.or.kr>) 와 아래 표에 기재된 개별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제 182 조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관련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조하신 후 투자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내역은 2022년 11월 11일 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이며, 실제 투자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단위 : 백만원)

번호	리스명	형태	시가총액	AMC	홈페이지
1	KB 스타리츠	상장리츠	443,687	KB 자산운용	http://kbstarreit.com
2	코람코더빌리츠	상장리츠	184,628	코람코자산신탁	http://koramcothe1.com
3	신한서부티엔디리츠	상장리츠	214,871	신한리츠운용	http://shsbreit.com
4	미래에셋글로벌리츠	상장리츠	101,274	미래에셋자산운용	https://www.globalreit.miraeasset.com
5	NH 올원리츠	상장리츠	133,352	NH 농협리츠운용	http://nhallonereit.com
6	SK 리츠	상장리츠	932,649	SK 리츠운용	http://www.skreit.co.kr
7	디앤디플랫폼리츠	상장리츠	214,130	디앤디인베스트먼트	http://dndplatformreit.com
8	ESR 캔달스퀘어리츠	상장리츠	821,458	캔달스퀘어리츠운용	http://www.esrks-reit.com
9	코람코에너지리츠	상장리츠	430,720	코람코자산신탁	http://koramcoenergyplus.com
10	제이알글로벌리츠	상장리츠	849,704	제이알투자운용	https://www.jrglobalreit.com
11	미래에셋맵스리츠	상장리츠	69,546	미래에셋자산운용	https://www.maps1reit.miraeasset.com
12	NH 프라임리츠	상장리츠	77,346	NH 농협리츠운용	http://nhprimereit.com
13	롯데리츠	상장리츠	888,051	롯데에이엠씨	http://www.lottreit.co.kr/
14	신한알파리츠	상장리츠	529,362	신한리츠운용	http://www.shalphareit.com
15	이리츠코크렙	상장리츠	335,077	코람코자산신탁	http://www.ereits.co.kr
16	맥쿼리인프라	상장인프라펀드	4,635,482	맥쿼리인프라투자회사	https://www.mkif.com
17	TIGER 단기채권액티브	단기채 ETF	677,620	미래에셋자산운용	https://bit.ly/3hxGJlc
18	KODEX 단기채권 PLUS	단기채 ETF	1,493,896	삼성자산운용	https://bit.ly/3TtLrf
19	KBSTAR KIS 단기종합채권 (AA-이상) 액티브	단기채 ETF	223,461	KB 자산운용	https://bit.ly/3UsBojx
20	KOSEF 단기자금	단기채 ETF	89,769	키움투자자산운용	https://bit.ly/3WQjXeI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① 투자개요

- 이 투자신탁은 국내 상장된 리츠(REITs)에 주로 투자하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투자 신탁재산을 국내 리츠(REITs), 부동산 관련 주식, 인프라펀드, 채권펀드에 투자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상승 및 배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리츠(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부동산투자회사(REITs: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이하 리츠)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유가증권에 투자·운영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회사입니다. 투자자는 리츠를 통해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대형 오피스, 물류센터, 상업시설, 임대주택과 같은 다양한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임대수익(Income gain)과 매각차익(Capital gain)을 통해 안정적인 배당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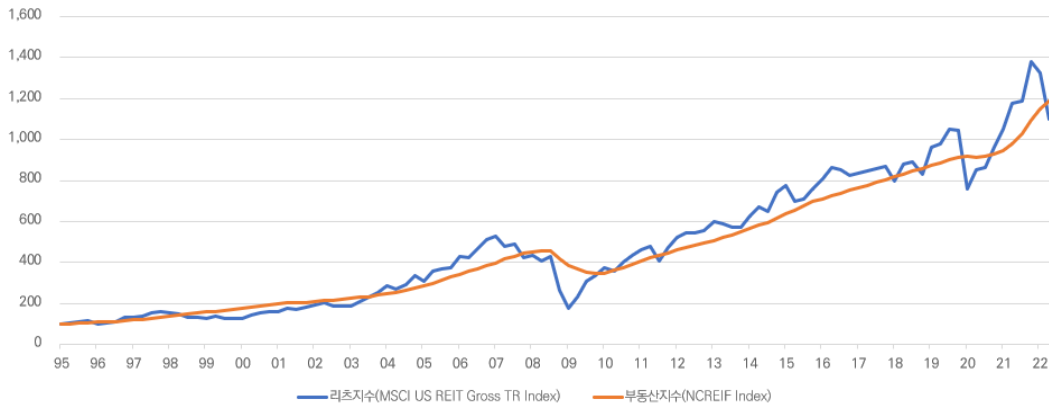
물류 (공항, 도로, 항만, 항공), 에너지 (저장 및 수송, 서비스 등), 유틸리티 등 운용 수익을 제공하는 회사로,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및 동법 제9조 제18항 제2호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이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② 주요 투자전략

1) 리츠 투자 전략

-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리츠는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하지만 **장기적으로 실물 부동산 가치와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당사는 실물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고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가치를 측정하여 투자에 활용합니다. 리츠가 보유한 자산의 순자산가치(부채를 제외한 부동산 자산의 가격)와 리츠의 시가총액을 비교하여 저평가 또는 고평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물 시장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경제 환경, 자산 별 공급/수요/투자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밸류에이션에 적용합니다.

미국 상장 리츠 지수 vs 실물 부동산지수 성과 추이



[자료: Bloomberg, 이지스자산운용 (기준일 2022.06.30)]

이지스 리츠 투자 종목 선정 프레임



[자료 : 이지스자산운용]

2) 부동산 기업군 투자 전략

- 국내 상장 기업 중 공간을 임대하는 비즈니스 영위 기업으로서 글로벌 리츠 관점에서 광의의 리츠로 볼 수 있으며, K리츠와 상관관계가 낮은 기업, 경쟁우위를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합니다.
- 역사가 긴 미국의 경우 리츠가 12개 섹터로 다양화되어 있는 반면에 국내 리츠는 자산 유형이 한정되어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리츠는 아니지만 글로벌 리츠 스탠다드에서 광의의 리츠로 이해할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하는 비즈니스' 영위 종목을 일부 선별하여 분산 투자 효과를 증대합니다.
- 미국에서도 데이터센터, 통신타워 등은 리츠 제도의 효율성을 이용해 주주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반기업에서 리츠로 전환된 사례입니다.

I K리츠 시장에 아직 없는 형태의 미국 상장 리츠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rown Castle International (통신타워 리츠) ▪ 글로벌 4만 개의 셀타워 사이트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quinix(세계 매출 1위 데이터센터 리츠) ▪ 글로벌 200여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ci Properties (스팩셀티 리츠) ▪ 라스베이거스 및 미국 전역 카지노, 골프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PR Properties(스팩셀티 리츠) ▪ 놀이공원, 영화관, 스키 리조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tra Space Storage (개인용 창고 리츠) ▪ 개인용 창고는 미국에서 이미 대중화된 보관 시설로 리츠가 대규모 사업자로 시장 주도

I 인프라 및 부동산기업군 예시 (공감 임대 비즈니스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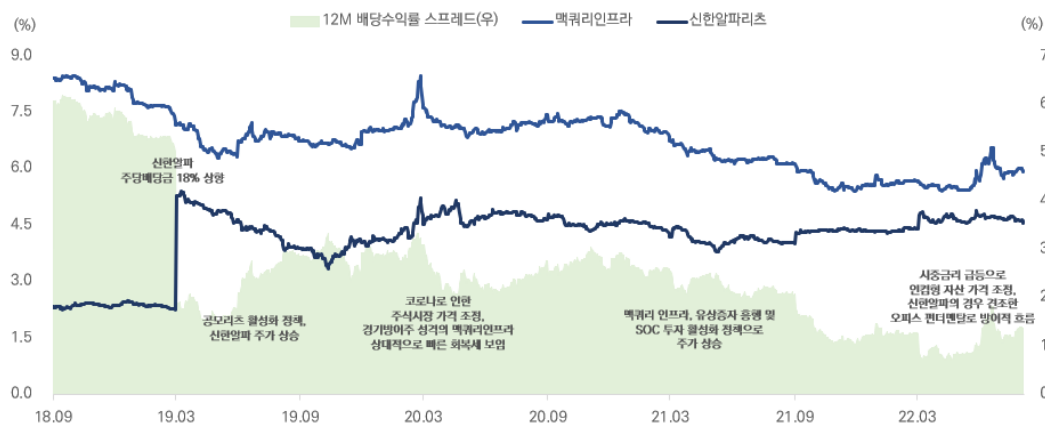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맥쿼리인프라 (인프라펀드) ▪ 17개 국내 인프라사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케이아이엔엑스 (KINX,) ▪ 국내 유일 중립 인터넷 연동 (IX) 사업자로 데이터센터 운영. ▪ 아마존, 삼성SDS 등에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텔신라 (호텔운영) ▪ 국내 최고 수준 호텔로 인정받고 있는 서울신라호텔, 제주신라호텔 등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난티 (호텔운영) ▪ 아난티 남해를 시작으로 아난티 코브 등 고급 리조트 & 골프장 사업 영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골프존카운티 (골프장 운영) ▪ 골프존과 M&A파트너스의 JV로 18개 골프장 387개 홀 운영하며 규모의 경제 달성 ▪ (2023년 코스피 시장 상장 추진 중)

[자료: 각 사 IR 자료, 이지스자산운용]

3) 인프라펀드 투자 전략

- 리츠는 기초자산인 부동산 가격이 시장 환경에 따라 크게 변동하지만, 인프라펀드는 보유자산의 잔존가치가 낮아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낮은 편입니다.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상장 인프라 펀드의 차입 한도는 30%로 제한되어 리츠 대비 금리에 대한 이익 민감도도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높은 리츠가 고 평가되어 인프라펀드와의 배당수익률 스프레드 확대 시 리츠의 비중을 축소하고, 반대의 경우 리츠 비중을 확대하여 포트폴리오 효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맥쿼리인프라 vs 신한알파리츠 배당수익률 추이



[자료: Bloomberg, 이지스자산운용 (기준일: 2022.08.31)]

4) 채권펀드 배분 전략

- 채권 자산군은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 리츠 자산군을 매입하기 위한 버퍼로서, 채권 자

산 군 자체로서 수익률을 증대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안정적으로 평가되는 단기채 ETF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리츠와 인프라펀드는 정기적인 배당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인컴자산으로서 해당 자산군들의 배당수익률이 채권금리와와의 스프레드가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단기채 ETF의 비중을 높이는 배분 실행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이지스 라이징 K리츠 펀드 모델 포트폴리오 예시



자산 전략	
K리츠 비중 배분	• K리츠 P/NAV, 채권금리와의 스프레드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전반적인 고평가 영역으로 갈 경우 리츠 자산비중 축소
부동산기업군	• 글로벌 리츠 관점에서 공간을 임대하는 비즈니스 영위 기업 중 K리츠와 상관관계가 낮은 기업, 경쟁우위를 보유한 기업 선별 투자
인프라 자산군	• 인프라펀드는 운영기한이 끝나면 정부에 자산을 반납하는 구조로 보다 채권과 같은 성향을 보임. 안정적인 배당구조 보유한 리츠 종목과의 배당수익률 스프레드 활용하여 투자 비중 리밸런싱
채권 자산군	• 채권 자산군의 경우 저평가 영역에 들어간 리츠 자산군을 매입하기위한 버퍼로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보다는 안정적인 단기채 중심으로 운영

[자료 : 이지스자산운용]

(2) 비교지수: 없음

- 이 투자신탁은 현재 성과 비교를 위해 적합하고 공신력 있는 비교지수가 시장에 없으므로, 이 투자 신탁은 특정한 비교지수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전략에 부합하는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 등에 따라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비교지수가 변경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3) 위험관리

① 위험관리 체계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 자산의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체계를 실행합니다.

- 1) 사전적 위험관리: 운용부서의 운용계획, 위험 관리요소를 사전에 정립하고 공유하여 투자전략의 준수여부를 상시 감독
- 2) 상시 위험관리: 실물 부동산 시장의 위험 요인, 부동산 가치와 상장 리츠 가격 추이 변동, 투자 종목 이슈, 종목별 보유한도, 유동성 등을 매일 확인하여 빠른 대응 준비
- 3) 사후적 위험관리: 투자 성과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점 보완

②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조치계획 등

- 이 투자신탁은 평균적인 환매규모 대비 유동성 자산의 보유 비율, 보유 자산을 매각하기 위해 소요되리라 예상하는 기간, 집합투자기구의 순자산가액 대비 일정기간의 누적 환매금액 등을 측정하여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유동성 위험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③ 환해지 여부 : 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며 해외 자산에는 투자하지 아니하므로 환해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작성된 것으로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당사 내부기준의 변경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 신고)하여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합니다. 따라서 투자대상의 배당수익과 자본이익이 주된 수익이며, 투자한 자산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률(투자수익/손실)이 결정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구조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산가격 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인프라, 채권 및 주식 관련 자산에 투자하며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험에 노출되며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또한 홍수, 지진, 화산, 해일, 화재, 폭발 등의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 위험에 의해서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크게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 및 어음 등의 가격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 및 어음 등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이 아니며,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분배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관계법령에 따라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투자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투자금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는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각 투자자산의 수익률은 정부정책, 경기사이클과 같은 시장위험과 개별기업 및 투자신탁의 수익성 등의 개별위험 요인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러한 외부 변수들의 변화는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익 혹은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등의 가격변동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과 같이 거래되므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 위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츠의 가격은 부동산 경기 외에도 경제 상황, 공급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해당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좋은 상황에도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상장된 리츠의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부동산/인프라 집합투자기구 등의 유동성 위험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리츠(REITs)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인프라에 간접적으로 투자하게 되는 인프라 관련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는 소형주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 내의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주식 등에 비해 더 큰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	관련 거래상대방 또는 보유하는 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용 위험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증권 가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개방형펀드 위험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펀드로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자의 환매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자산의 매도 가격이 결정되며, 이로 인한 손익은 환매분 외 기타 수익자에게 동일하게 귀속됩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자산배분위험	이 투자신탁은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 리츠, 인프라, 채권 및 주식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산배분전략의 성과가 시장의 움직임을 하회할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국내 리츠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이 주요하게 투자하는 국내 리츠는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증권시장에 상장되어야 하며, 상장이 되더라도 거래량 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및 가격에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내 리츠가 투자한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각이 지연될 수 있어, 해당 리츠의 신탁계약기간내에 매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국내 리츠가 투자한 보유 부동산이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 및 정책의 변화 등으로 매각 시점이 조기에 이루어져서 조기 상환의 위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 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종목)	이 집합투자기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소수 종목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일부 종목의 집합투자기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 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ETF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인 ETF(Exchange Traded Funds)는 상장폐지위험, 추적대상지수에 대한 추적오차 발생위험, 거래규모 및 기초자산의 유형에 따른 유동성위험, 증가와 NAV(순자산)의 괴리위험, 설정/환매시 세금 부담위험, 추적대상지수의 산출방식 변경 및 중단위험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펀드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분리과세 관련 과세위험	이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법에서 정한 분리과세 및 보유기간 요건에 미 충족하는 경우 투자자가 받은 분리과세 혜택에 대하여 세금이 원천 징수될 위험이 있습니다.
법률, 조세 및 규제위험	대한민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에 의한 법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에 불리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법률, 조세 및 규제 당국의 변경이 투자신탁의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규정 및 제한은 투자신탁이 매입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금액 및 유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시장가격, 유동성, 증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현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펀드규모위험	투자신탁의 설정 초기 또는 환매 등의 이유로 투자신탁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투자대상 자산의 편입 및 분산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자산에 집중 투자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투자신탁의 성과 및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량 환매 위험	이 투자신탁에 집중된 대량환매가 발생할 경우에는 환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운용전략을 유지하거나 효과적으로 운용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이는 환매된 집합투자증권 및 잔존 집합투자증권의 가치에 손실을 초래하여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법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 혹은 일정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 청구일과 환매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 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과세 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과세제도 변경 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타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작성 시점 현재의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파악된 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위험을 명시한 것으로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투자위험등급: 2 등급	높은위험
<p>이지스자산운용(주)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국내 리츠 및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며,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투자위험 6 등급 중 2 등급에 해당되는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 상품은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 하락에 따른 원본손실 위험을 충분히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지니고 있으며, 상기 위험 수준을 이해하고 높은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이 기준에는 신용위험 및 운용위험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p>	

또한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투자위험 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설정 후 3년이 경과 시, 일간 수익률의 최대손실예상액(이하 '97.5% VaR')*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97.5% VaR 모형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증권신고서 작성일 현재 이 투자 상품은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산정하였습니다.

※ 이 위험등급분류는 이지스자산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으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한 것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 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습니다.

[이지스자산운용 투자위험등급 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1)"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2)"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3)"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1 좌 단위로 매입이 가능하며, 최초설정시 수익증권 1 좌당 가격은 1 원입니다.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2)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T)로부터 2영업일(T+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T)로부터 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구분	1영업일(T)	2영업일(T+1)	3영업일(T+2)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3) 선취판매수수료

- ① A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② A-e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③ A-G클래스 집합투자증권: 납입금액의 0.7% 이내
- ④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4) 종류별 가입요건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경우로,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 창구 판매 수수료·보수 보다 낮은 판매 수수료·보수가 적용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자격 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 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 제6조 제7항에 따른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5) 매입 청구의 취소·정정 등

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 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매입 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 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한 경우나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도 가능)

※ 환매 가능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 허용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3영업일(T+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5영업일(T+4)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T)로부터 4영업일(T+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6영업일(T+5)에 환매금액 지급

구분	1영업일(T)	3영업일(T+2)	4영업일(T+3)	5영업일(T+4)	6영업일(T+5)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 청구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15시 30분(오후 3시 30분) 경과 후 환매 청구시	환매청구일	-	기준가격 적용일	-	환매대금 지급일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매입청구의 취소 및 정정은 매입청구일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3) 후취판매수수료

- ① S클래스 집합투자증권: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 ② 그 외 클래스 집합투자증권: 해당사항 없음

(4)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5)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투자자는 이 투자신탁에 대해 일부환매를 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투자자명부에 기재된 투자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투자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날의 2영업일 전일(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3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투자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투자자의 이익 또는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및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자자총회 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9)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 시 30 분(오후 3 시 30 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가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다. 전환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기준가격은 그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그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구 분	내 용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클래스간 판매회사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 및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

(주1)공휴일·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집합투자기구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text{기준가격} = \frac{\text{펀드의 순자산총액}}{\text{총 좌수}}$$

(주2)기준가격은 매일 산정, 공고·게시하지만,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어 공정가액을 적용하는 평가대상 자산은 매일 해당하는 공정가액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공고·게시된 기준가격은 실제 공정가액을 반영한 가치와 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주식의 경우 전일에 해당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자산	평가방법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일의 가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외화표시 상장채권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일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채무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상장채무증권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무증권을 포함)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최종 기준가격(외화표시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최근의 일자에 공고된 기준가격) 단,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그 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의 평가가격 또는 해당 장외파생상품발행 및 계산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하는 가격
외화표시 자산의 평가시 환국원화로 환산하는 환율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
부동산 및 부동산관련 자산	부동산의 평가는 취득가격에 의하되, 부동산의 취득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 1년마다 감정평가업자가 제공한 가격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평가 대출채권의 평가는 장부가로 평가
기타자산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 등

구분	주요내용
구성	해당투자부문대표, CM 부문대표, AM 부문대표,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경영기획실장, 위험관리팀장, 리서치센터장, 기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
업무	<p>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필요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의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실채권 등 부실자사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 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미수금 및 미지급금 등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8. 기타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 등에 규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련법규 및 집합투자규약에 의해 위임된 사항으로서 집합투자재산의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이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1.0% 이내	-	-	-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납입금액의 0.5% 이내	-	-	-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	납입금액의 0.7% 이내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입하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 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이 없으며, 판매수수료 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전용으 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무권유저비용(C-G)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 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아 가 입하거나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가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 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투자자 전용 수익증권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 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 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 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 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고액(C-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 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 금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	-	-	-	-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C-Pe)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 여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 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 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C-P2)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 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 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C-P2)	판매회사의 인터넷뱅킹을 통하 여 가입한 자로서, 근로자퇴직금 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만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 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 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 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 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 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 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 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 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 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 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 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 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 익증권	-	3년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	-

집합투자기구 명칭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 수수료	전환 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	-	-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전환시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 내에서 판매회사 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 판매회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인당 투자금액 제한 등 가입제

한 사항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1) 이 투자신탁의 관련보수 등

종류	부과비율(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총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 · 비용	합성총보수 · 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증권 거래 비용
A	0.7000	0.6000	0.0300	0.0200	1.3500	1.690	0.0000	1.3500	1.6600	0.0000
A-e	0.7000	0.3000	0.0300	0.0200	1.0500	1.170	0.0000	1.0500	1.0500	0.1268
A-G	0.7000	0.4200	0.0300	0.0200	1.1700	-	0.0000	1.1700	1.4800	0.0000
C	0.7000	0.9800	0.0300	0.0200	1.7300	1.720	0.0000	1.7300	2.0400	0.0000
C-e	0.7000	0.4900	0.0300	0.0200	1.2400	1.490	0.0000	1.2400	1.2400	0.1181
C-G	0.7000	0.6800	0.0300	0.0200	1.4300	-	0.0000	1.4300	1.7400	0.0000
C-F	0.7000	0.0300	0.0300	0.0200	0.7800	-	0.0000	0.7800	0.7800	0.1695
C-I	0.7000	0.2900	0.0300	0.0200	1.0400	-	0.0000	1.0400	1.3500	0.0000
C-P	0.7000	0.6400	0.0300	0.0200	1.3900	-	0.0000	1.3900	1.7000	0.0000
C-Pe	0.7000	0.3200	0.0300	0.0200	1.0700	-	0.0000	1.0700	1.3800	0.0000
C-P2	0.7000	0.3600	0.0300	0.0200	1.1100	-	0.0000	1.1100	1.4200	0.0000
C-P2e	0.7000	0.1800	0.0300	0.0200	0.9300	-	0.0000	0.9300	1.2400	0.0000
C-W	0.7000	0.0000	0.0300	0.0200	0.7500	-	0.0000	0.7500	1.0600	0.0000
S	0.7000	0.2300	0.0300	0.0200	0.9800	-	0.0000	0.9800	1.2900	0.0000
S-P	0.7000	0.2000	0.0300	0.0200	0.9500	-	0.0000	0.9500	1.2600	0.0000
S-P2	0.7000	0.1700	0.0300	0.0200	0.9200	-	0.0000	0.9200	1.2300	0.0000
지급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	사유 발생시	-	-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 기타 비용비율을 추정치

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8.09 ~ 2024.08.08]

※ 기타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구성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기타비용	감사보수, 펀드평가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분담금, 보관대리인보수 등.	-

(주2) 총보수·비용 비율(TER)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균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2024년 07월 31일 기준)을 의미하며, A, A-E, C, C-E 수익증권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주5)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사용하므로,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3.08.09 ~ 2024.08.08]

※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증권거래비용, 금융비용 및 발행분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발행분담금은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납부합니다.

구분	구성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거래비용	주식·채권·수익증권 등의 자산매매수수료, 대차관리수수료, 대차수입수수료, 대차중개지급수수료, REPO 거래수수료, REPO 중개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등	400
금융비용	금리스왑지급이자, REPO 지급이자, 통화스왑지급이자, 차입금지급이자, 외화차입지급이자 등	-
발행분담금	발행분담금	12

(주6)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 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7) 금융비용 종류: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수수료 및 보수·비용	237	379	526	836	1,716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37	379	526	836	1,716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 및 보수·비용	157	268	384	629	1,331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7	268	384	629	1,331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수료 및 보수·비용	189	313	441	712	1,48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9	313	441	712	1,4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수수료 및 보수·비용	177	360	549	946	2,054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7	360	549	946	2,0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 및 보수·비용	127	259	396	685	1,50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27	259	396	685	1,5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 및 보수·비용	147	298	455	787	1,722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7	298	455	787	1,7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수료 및 보수·비용	80	163	250	435	969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80	163	250	435	96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C-I)	수수료 및 보수·비용	107	217	333	577	1,276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7	217	333	577	1,27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 및 보수·비용	142	290	443	765	1,67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2	290	443	765	1,67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224	342	593	1,311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0	224	342	593	1,31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 및 보수·비용	114	232	355	615	1,35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14	232	355	615	1,3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 및 보수·비용	95	195	298	517	1,147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5	195	298	517	1,14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 및 보수·비용	77	157	241	418	933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77	157	241	418	933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비용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수수료 및 보수·비용	100	205	314	544	1,206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00	205	314	544	1,2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 및 보수·비용	97	199	304	528	1,171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7	199	304	528	1,171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퇴직연금(S-P2)	수수료 및 보수·비용	94	192	295	511	1,135
	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94	192	295	511	1,135

(주1) 위 예시내용은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율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2) S클래스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분배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해당 이익금의 범위 내에서 분배를 유보하며,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 ②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①의 규정에 의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 ③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 이라 한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투자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게 인도된 후에는 판매회사가 투자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수익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

※ 환급비율: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2026.12.31)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탁, 회사, 또는 조합(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이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중 거주자별 투자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해서는 9.9%(소득세 9%, 지방소득세 0.9%)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함)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3.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제1호 또는 제2호에 투자(투자대기자금의 일시적인 운용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다) 및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② 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적용 대상

이 되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내역을 해당 거주자가 매매를 위탁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위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거주자가 투자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이전에 제1항을 적용 받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라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고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 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사항은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이체 받은 금액은 제외)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저축금액(최대 600만원 한도)의 12%(또는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지방소득세 포함시 13.2%(또는 16.5%)로 세액공제 효과]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구 분	주요내용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분리과세)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이연 퇴직 소득의 연금수령에 따른 금액은 제외) 연금소득이 1,5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 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4 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해지가산세	해당사항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연금소득세 5.5~3.3%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부득이한 연금외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일반해지시 과세	기타소득 16.5%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한도 이내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최대 600만원 이내의 금액)하여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
-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

※ 상기 기재된 세율 및 과세관련 사항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등에 근거하며, 해당 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기 기재되어 있는 세금관련 내용은 수익자의 일부 환매 또는 증도 해지시 적용기준 및 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과세에 관하여 판매회사 및 조세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 기(2023.08.09 ~ 2024.08.08)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1 기
	(2024.08.08)
운용자산	262,204,290
증권	240,472,485
파생상품	0
부동산/실물자산	0
현금 및 예치금	21,731,805
기타 운용자산	0
기타자산	5,520,215
자산총계	267,724,505
운용부채	0
기타부채	422,400
부채총계	422,400
원본	232,028,814

수익조정금	-48,126
이익잉여금	35,321,417
자본총계	267,302,105

(주 1)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 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주 2) 위 재무제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재무상태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 기
	(2023.08.09 - 2024.08.08)
운용수익	35,321,417
이자수익	566,775
배당수익	16,540,790
매매/평가차익(손)	18,213,852
기타수익	0
운용비용	0
관련회사 보수	0
매매수수료	0
기타비용	0
당기순이익	35,321,417
매매회전율	51.87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 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 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 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1)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주, 백만원, %)

매매회전율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 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96	51.87	5.51
63,829	302	20,282	102			

주 1) 동종유형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2)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기(2023.08.09 - 2024.08.08)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404	0.3298	0.0817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88	0.0706	0.0805
부동산	0	0	0
장내파생상품	0	0	0
장외파생상품	0	0	0
기타(REPO,대차,콜 등)	0	0	0
합 계	492	0.4005	0.0814

주 1)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 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 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을 생략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 : 원)

과 목	제1기(2024.08.08)	
	금	액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21,731,805
1. 현금및현금성자산	21,731,805	
2. 예치금		
3. 증거금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240,472,485
1. 지분증권	218,232,170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22,240,315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5,520,215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7,978	
4. 미수배당금	5,512,237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 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267,724,505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422,400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5. 기타미지급금	422,400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422,400
자 본		
1. 원 본	232,028,814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익잉여금	35,273,291	
(발행좌수 당기: 232,028,814 좌		
전기: 0 좌		
전전기: 0 좌)		
(기준가격 당기: 1,101.23 원		
전기: 0.00 원		
전전기: 0.00 원)		
이익잉여금		35,321,417
수익조정금		-48,126
자 본 총 계		267,302,105
부 채 와 자 본 총 계		267,724,505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과 목	제1기(2023.08.09-2024.08.08)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7,107,565
1. 이 자 수 익	566,775	
2. 배당금수익	16,540,790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21,875,996
1. 지분증권매매차익	6,478,694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14,693,941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703,36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3,662,144
1. 지분증권매매차손	3,658,752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 기타거래손실	3,392	
운 용 비 용		
1. 운용수수료		
2. 판매수수료		
3. 수탁수수료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5,321,41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152228581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가.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A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금액	(출자지 분수)	금액	(출자지 분수)	금액	(출자지 분수)	금액
2023.08.09 - 2024.08.08	0.00	0.00	0.03	0.03	0.03	0.04	0.00	0.0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나.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A-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3.08.09 - 2024.08.08	0.00	0.00	0.32	0.32	0.00	0.01	0.31	0.36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2023.08.09 - 2024.08.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990,804 좌/1,090,236 원

다.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E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3.08.09 - 2024.08.08	0.00	0.00	0.04	0.04	0.02	0.02	0.02	0.0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2023.08.09 - 2024.08.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55,060 좌/61,002 원

라.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재간접형) class C-F

(단위 : 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출자지 분수)	
2023.08.09 - 2024.08.08	0.00	0.00	2.00	2.00	0.00	0.00	2.00	2.29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말 잔고 금액은 결산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 2) 2023.08.09 - 2024.08.08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7,674,741 좌/8,449,262 원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을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단위 : %)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3.08.22 ~ 24.08.21	-	-	-	23.08.09 ~ 24.08.21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16.66	-	-	-	15.89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7.91	-	-	-	7.79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A-E	15.46	-	-	-	14.71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7.91	-	-	-	7.79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리츠-재간접형) class C-E	15.33	-	-	-	14.58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7.91	-	-	-	7.79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	15.76	-	-	-	15.00

(리츠-재간접형) class C-F					
비교지수	-	-	-	-	-
수익률변동성(%)	7.91	-	-	-	7.79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

종류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
	23.08.22 ~ 24.08.21	-	-	-	-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재간접형)	16.66	-	-	-	-
비교지수	-	-	-	-	-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A-E	15.46	-	-	-	-
비교지수	-	-	-	-	-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E	15.33	-	-	-	-
비교지수	-	-	-	-	-
이지스 라이징 K 리츠 부동산투자신탁(리츠- 재간접형) class C-F	15.77	-	-	-	-
비교지수	-	-	-	-	-

주 1) 비교지수 : 해당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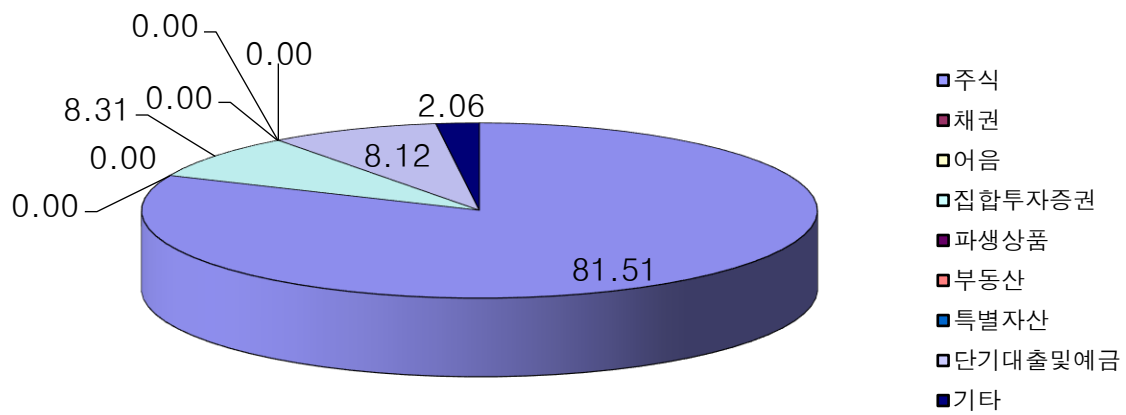
주 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 개월을 초과하고 1 년 미만인 경우(예:8 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 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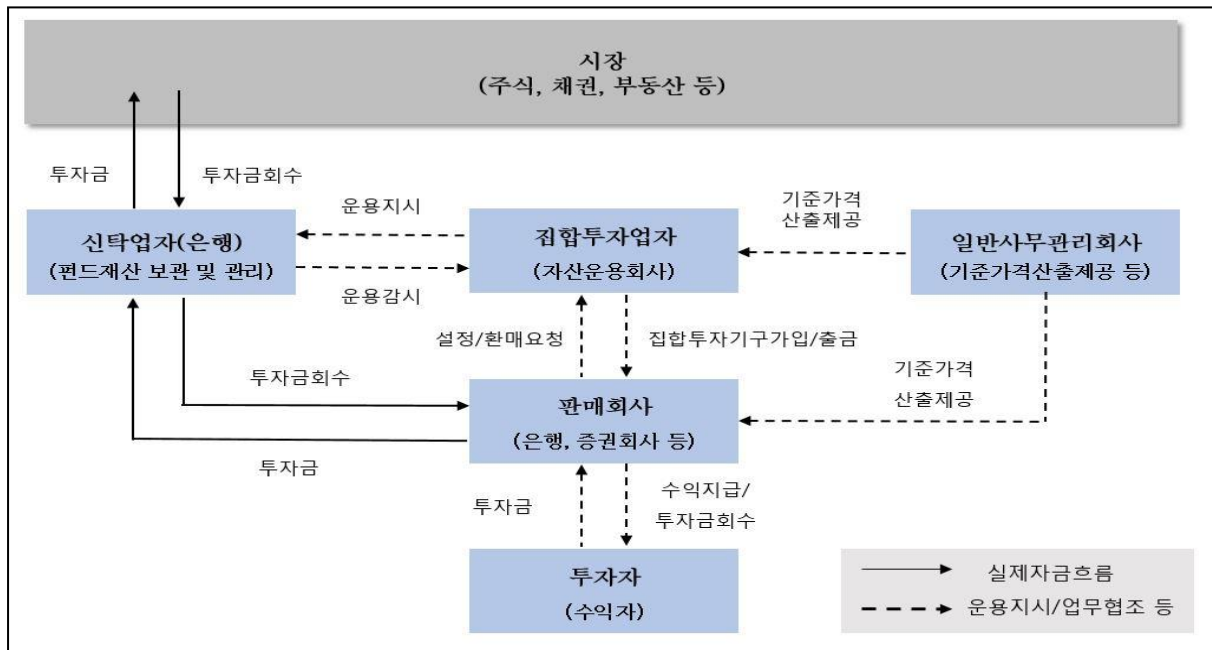


[2024.08.08 기준 / 단위 : 억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2	0	0	0	0	0	0	0	0	0	0	3
	(81.51)	(0.00)	(0.00)	(8.31)	(0.00)	(0.00)	(0.00)	(0.00)	(0.00)	(8.12)	(2.06)	(100.00)
합계	2	0	0	0	0	0	0	0	0	0	0	3
	(81.51)	(0.00)	(0.00)	(8.31)	(0.00)	(0.00)	(0.00)	(0.00)	(0.00)	(8.12)	(2.06)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은행, 증권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 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부동산,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15(여의도동, 세우빌딩) 14층 (연락처: 1544-7373, www.igisam.com)
회사연혁	- 2010.03: 회사설립(舊 피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2012.05: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로 사명변경
자본금	8,469,266,500원
주요주주현황 (2024.06.30 기준)	손화자(12.40%), 지에프인베스트먼트(주)(9.90%), 대신증권(9.13%), (주)우미글로벌(9.08%), (주)금성백조주택(8.59%), 현대차증권(주)(6.59%), (주)한국토지신탁(5.31%), (주)태영건설(5.17%)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업무
- ② 투자신탁의 운용·운용지시업무

(2) 의무

- ① 선관 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② 충실 의무: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3) 책임

-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신탁계약서·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투자신탁의 회계감사인이 주주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는 법에 따라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년도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1) 연결재무상태표

(단위: 원)

과 목	제15(당)기말	제14(전)기말
기 간	2023.12.31.	2022.12.31.
I. 현금및예치금	88,463,506,990	79,477,533,507
II. 당기법인세자산	46,288,629	183,267,921
III. 당기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436,508,709,916	407,149,102,129
IV. 기타포괄손익_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834,783,595	1,743,547,390
V. 관계기업투자	101,240,614,512	93,579,243,137
VI.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2,563,977,134	3,000,000,000
VII. 대출채권	53,933,930,675	54,909,383,949
VIII. 유형자산	92,559,904,130	10,390,124,427
IX. 사용권자산	11,681,860,999	14,508,947,760
X. 투자부동산	5,680,013,767	5,715,327,701
XI. 무형자산	2,606,593,848	3,000,281,435
XII. 이연법인세자산	3,110,859	302,022,185
XIII. 기타자산	126,850,167,084	130,410,935,154
자 산 총 계	935,104,524,159	804,369,716,695
I. 차입부채	342,190,690,987	279,623,471,000
II. 당기법인세부채	17,142,037,839	15,326,484,415
III. 충당부채	2,568,983,085	1,717,698,979
IV. 기타금융부채	79,357,849,217	61,291,233,118
V. 확정급여부채	-	-
VI. 이연법인세부채	15,910,783,280	16,187,563,429
VII. 기타부채	14,193,376,129	18,617,736,662
부 채 총 계	471,363,720,537	392,764,187,603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462,748,489,767	411,025,046,298
I. 자본금	8,469,266,500	8,469,266,500
II. 기타불입자본	143,299,762,901	122,639,639,751
III. 기타자본구성요소	-4,131,757,878	-2,731,574,810
IV. 이익잉여금	315,111,218,244	282,647,714,857
비지배지분	992,313,855	580,482,794
자 본 총 계	463,740,803,622	411,605,529,092
부채와 자본총계	935,104,524,159	804,369,716,695

(2) 연결포괄손익계산서

과 목	제15(당)기말	제14(전)기말
I. 영업수익	331,659,648,027	369,288,228,515
II. 영업비용	274,827,412,105	196,520,553,546
III. 영업이익	56,832,235,922	172,767,674,969
IV. 지분법손익	-5,449,047,728	-14,487,646,095
V. 영업외수익	27,345,283,001	13,497,987,148
V. 영업외비용	8,733,564,449	4,854,921,731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9,994,906,746	166,923,094,291
VII. 법인세비용	19,912,475,515	42,479,021,467
VIII. 당기순이익	50,082,431,231	124,444,072,824
IX. 기타포괄손익	-1,397,110,107	-2,369,659,200
X. 총포괄이익	48,685,321,124	122,074,413,624
XII. 주당이익	2,959	7,671

라. 운용자산 규모

(2024년 8월 21일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파생형	혼합자산	총계
	혼합주식	혼합채권	재간접					
수탁고	645	1,328	173	268,241	11,265	2,067	6,197	289,960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번지 대경빌딩

회사명	주식회사 신한은행
	(연락처: 1599-8000, www.shinhan.com)

(1) 주요 업무

- ①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②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③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④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⑥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⑦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⑧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1) 의무

-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내용에 따른 요구를 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내용에 따른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69조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2) 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신탁계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 28 (여의도동, 현대차증권빌딩) 18,19,20층 (연락처: 02-2180-0760, www.shinhanfundpartners.com)

(1) 주요 업무

- ①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 ② 투자신탁의 결산 및 분배금 지급과 관련한 정보의 작성 및 제공 업무
- ③ 투자신탁보수 및 운용비용 등의 산정 업무
- ④ 기타 위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2)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채권평가회사

(1) 회사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NICE피앤아이(주)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02-3215-1400, www.bond.co.kr)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02-398-3900, www.nicepni.com)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88 (02-2251-1300, www.koreaap.com)

(2) 주요업무

투자신탁 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에 제공하는 업무를 합니다.

- ① 채권시가평가 정보제공 업무
- ②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tool 제공업무
- ③ 자산평가 업무(부실채권 등 보유자산평가, ABS, MBS, 금리스왑 평가 등)
- ④ System 사업(채권운용지원시스템 BPO 제공, 통합신용위험 시스템 CRO제공 등)
- ⑤ 국내외 금융시장 정보수집, 조사, 연구 및 제공 업무
- ⑥ 채권관련 컨설팅 업무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서 소집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법 제 190 조 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법 제 190 조 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함)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 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로부터 6 개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합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위 '수익자총회의 소집' 내용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의결권 행사방법'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함)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의결권 행사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보고,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봅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함)
3.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함)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4 의 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함)
5.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신탁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 나.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 다. 법 제 184 조 제 4 항, 법 제 246 조 제 1 항 등 관련 관련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 라. 법 제 420 조 제 3 항 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마.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 제 1 항 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 바. 법시행령 제 245 조 제 5 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7. 그 밖의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 188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함)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 제 222 조 제 1 항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법 시행령 제 222 조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 193 조 제 2 항, 제 201 조 제 4 항, 제 191 조 제 3 항 단서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에 따른 환매연기의 효과, 절차 등에 준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함)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2.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3.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5.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6.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7.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규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 그리고 이지스자산운용 홈페이지(www.igisam.com)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나. 임의해지

-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으로서 설정한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함)을 설정하고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소규모 투자신탁 투자자보호 방안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나, 소규모 투자신탁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 (1)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한 후 6 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투자신탁 원본액이 15 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그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에 따른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으로 전환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단, 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이 정하고 있는 본래의 투자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 또는 설정 후 1 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 년)이 지난 후 1 개월 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 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는 상기 방법 이외에도 '운용전략 등이 유사한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또는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업자가 '임의해지', '다른 투자신탁과의 합병' 및 '다른 모투자신탁으로의 자산 이전'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리방법 및 시기를 정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투자신탁 등 세제혜택을 받는 소규모 투자신탁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연금사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투자자의 세제적격요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 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사항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결산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수익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로서 3 개월마다 1 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기준일"이라 함)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 라. 해지일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을 말함)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해당 운용기간"이라 함)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함)
5. 기타 법 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4. 법 제 247 조 제 5 항 각 호의 사항
 5. 기타 법 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마.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 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 230 조 제 3 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함)
 - 사.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3.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신탁업자는 투자자에게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통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상 또는 배상은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합니다.

(2) 수시공시

-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 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 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함)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아. 법 및 대통령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자. 집합투자계약의 변경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 차. 투자설명서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카.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대통령령 제 262 조 제 1 항 후단에 따라 공고·게시하는 경우에 한함)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함)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대통령령 제 81 조 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법 제 81 조 제 3 항 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및 설립 이후 2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타. 대통령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파.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함

하.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가.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www.igisam.com),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법 제 87 조 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2.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3.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1.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 87 조제 7 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2.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기본원칙	① 회사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중개회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운용·매매 체결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중개회사간 수수료율을 차등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근거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시 유의사항	①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집합투자기구를 위한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수료를 금융투자업규정 제 4-66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한 매매수수료 중 조사분석서비스 이용에 따른 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구분하여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회사가 중개회사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평가항목	평가시 고려요인	평가자
1	자산분석 서비스의 유용성 (운용/리서치 기여도)	- Market Strategy - 업종, 기업분석 - 리서치 지원 - 기업탐방 및 IR 지원	운용/리서치 담당자	70%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2	정보제공 및 Settlement	- 자료, 시장동향, 신상품 정보 제공 - 회사 펀드 마케팅 기여 - Back Office 협조 능력	운용담당자 및 매매담당자	15%
	3	주문집행능력 및 비용	- 주문집행의 정확도 - 주문집행의 신속성 - 유리한 호가의 제공 - 오류발생 빈도 - 매매체결업무수수료 기준	매매담당자	15%
	항목별 종합집계				100%
※ 비용 또는 수익 항목, 항목별 종합집계에 대하여 평가담당자는 단순 계산업무만 수행					
※ 평가 및 적용주기는 매 1 년으로 함					
배정기준	<p>① 회사는 선정된 중개회사에 대하여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중개회사별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차등 배정할 수 있다.</p> <p>② 회사는 계열회사인 중개회사에 대한 배분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③ 회사는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하여 배분비율의 범위 내에서 중개를 위탁하여야 한다.</p>				
미선정 중개사와의 거래승인	<p>회사는 선정된 중개회사에 한정하여 매매를 위탁하는 것이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미리 매매담당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중개회사로 선정되지 아니한 중개회사에게 매매를 위탁하거나 배분계획과 달리 위탁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그 파생상품 거래와 연계하여 주식,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거래자산, 운용전략 또는 매매방법이 특수한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3. Block Trading 을 하는 경우 4. 각 집합투자기구의 전체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기업분석 및 시장동향 등에 대한 정보제공으로 운용 및 리서치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운용업무담당 임원이 승인하는 경우 				
확인 및 점검	<p>① 담당부서는 중개회사의 평가, 선정 및 배분계획 수립에 대하여 그 절차 및 결과가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p> <p>② 담당부서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을 매 분기별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위탁내역이 다른 경우 준법감시인은 담당부서장에게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p>				

구분	중개회사 선정에 관한 기준
<p style="text-align: center;">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p>	<p>증권 거래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에 관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은 이지스자산운용(주) 내부통제 기준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음</p> <p>①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투자자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집합투자기구 또는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중개수수료)이나 수익 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른 매매체결 능력 3.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p>② 회사는 중개회사를 선정할 때 자기가 운영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조건으로 매매주문을 위탁하기로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 중개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제공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정당한 근거나 사유없이 중개회사간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특히 관계회사 등에 대하여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우대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매매담당자는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계획된 배분비율에 의하여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매매대상자산 또는 매매방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개회사에 매매를 위탁하거나 매매주문 배분계획을 준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받아 달리 위탁할 수 있다.</p> <p>⑤ 준법감시인은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과 실제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게 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p>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주체	이지스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목적	집합투자기구 운용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신뢰확보를 위해 투자자, 집합투자업자 간 집합투자기구 성과 공유장치 마련 등
투자승인일자	2022년 11월 8일
투자집행시기	최초 설정일
투자금액	2억원
투자기간	최초설정일부터 최소 3년 이상. 다만, 3년 이전에 투자신탁 신탁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신탁계약서상 존속기한까지
투자금 회수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기간 이후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일 경우에는 일시 회수 가능함-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의 50% 이내로 함- 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여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임- 투자금 회수 시에는 회수결과를 자산운용보고서에 기재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할 예정임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붙임] 용어풀이

※ 증권신고서에 나오는 용어 중 별도 설명이 필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용 어	내 용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탁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순자산	펀드의 투자원금 및 운용성과를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신탁보수	펀드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권유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를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그 방법 및 절차는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용 어	내 용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